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371호(號) 1931(昭和 6)년 7월 3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87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, 사설철도, 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總督府鐵道, 私設鐵道, 軌道及航路間旅客並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8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7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조(條)제3호(號) 중(中) 「(자동차선[自動車線]을 포함[包含]함)」을 「(자동차선[自動車線] 및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항로[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航路]를 포함[包含]함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5조(條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단서(但書)를 추가(追加)함.

단(但) 소관(所管)을 같이하는 철도(鐵道)에 있어서도 선로(線路)가 연속(連續)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여객운임(旅客運賃)은 각(各) 구간(區間) 마다 1km(浬) 미만의 단수(端數)를 1km(浬)로 절상(切上)하고, 그 구간(區間) 마다 이것을 계산(計算)함.

제22조(條)의2 소하물(小荷物)에 대(對)한 경로(徑路) 2도(途) 이상(以上)이 있는 경우는 국(局)에서 지정(指定)한 경로(徑路)에 의해 이것을 운송(運送)함.